

안성공도 참아름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 국민임대주택은 30년이상 임대하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하지 않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건설위치 : 경기도 안성시 공도 택지개발지구내 2블록(국민임대 1,039호), 5블록(국민임대 517호)

임대대상 및 조건

■ 임대대상

블록	공급 형별	세대별 계약면적(㎡)					모집 호수			층수	해당동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
		공급면적			기타 공용 면적	합계	계	우선 공급	일반 공급				
		전용	주거 공용	계									
2	39	39.58	14.97	54.55	13.23	67.78	470	141	329	13~22	201,204,206, 207,208,209,210	벽식, 경사 지붕, 개별 난방	2008년 8월
		39.58	14.95	54.53	13.22	67.75				13~15	201,202,203,205		
	49A	49.52	18.36	67.88	16.55	84.43	357	107	250	13~22	202,203,204,205,206 207,208,209,210		
		49.35	18.30	67.65	16.49	84.14				13~15	201,205,206,207		
	49B	49.56	18.65	68.21	16.56	84.77	29	9	20	14~15	206,207		
	49C	49.88	18.27	68.15	16.67	84.82	57	13	44	17~22	208,209,210		
	59A	59.99	22.70	82.69	20.05	102.74	63	20	43	16~17	203,204,205		
		59.75	22.51	82.26	19.98	102.24				14	202		
	59B	59.88	22.93	82.81	20.01	102.82	63	20	43	16~17	203,204,205		
		59.68	22.85	82.53	19.94	102.47				14	202		
5	39	39.58	14.97	54.55	14.18	68.73	235	71	164	15~22	501,502, 503,504		2008년 6월
	49A	49.52	18.35	67.87	17.74	85.61	175	52	123	15~22	501,502, 503,504,506		
		49.35	18.31	67.66	17.68	85.34				15	506		
	49B	49.56	18.66	68.22	17.75	85.97	15	8	7	15	506		
	49C	49.88	18.27	68.15	17.87	86.02	40	12	28	20~22	502,503		
	59A	59.79	22.52	82.31	21.42	103.73	52	13	39	12~14	505		

-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임.
- ※ 우선공급호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4항 내지 제5항의 우선공급대상자에게 배정되는 호수이며, 우선공급 신청미달호수는 일반공급분으로 전환됨.
- ※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합니다.

■ 임대조건

(단위 : 원)

블록	공급 형별	임 대 보 증 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	잔금(입주시)	
2, 5 블록	39	9,000,000	1,800,000	7,200,000	99,000
	49A	16,000,000	3,200,000	12,800,000	147,000
	49B				
	49C				
	59A	23,000,000	4,600,000	18,400,000	189,000
	59B				

-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 ▷ 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최초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한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입주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함.
- ▷ 예비당첨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함.

신 청 자 격

- ▷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07.10.29)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 득	월평균소득 2,410,370원 이하 (단, 4인이상 세대의 경우 2,636,380원 이하) * 월평균소득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며, 4인이상 세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구성원(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4인이상인 세대를 의미함.
토 지	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원 이하 * 지적법에서 정한 14개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을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는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자동차	현재가치(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기준 2,200만원 이하

* 비영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원부상 장애인 사용자자동차는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4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 ①이혼녀와 자녀 ②법정분가한 차남 이하 아들 및 출가한 딸과 직계존속
 ③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④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⑤미혼인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함.

- ※ 1세대(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 이 주택에 입주 및 거주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주택 및 자산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검색결과가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한(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이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및 제21조의2에 따르며, 신청접수시 “무주택 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 우리 공사의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 신청자격기준이 되는 월평균소득금액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이상 세대는 4인가구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공급일정 및 장소

■ 공급일정

공급 형태	신청자격별		신청접수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월평균소득	순위			
전용 면적 50㎡ 이하	2,410,370원 이하 (4인이상 세대는 2,636,380원 이하)	우선공급	2007.11.8 (09:30 ~ 16:30)	2007.11.28 (15:00)	2007.12.26 ~ 12.28 (10:00 ~ 16:00)
	1,721,700원 이하 (4인이상 세대는 1,883,130원 이하)	1,2,3순위	2007.11.9 (09:30 ~ 16:30)		
	2,410,370원 이하 (4인이상 세대는 2,636,380원 이하)	1,2,3순위	2007.11.12 ~ 11.13 (09:30 ~ 16:30)		

전용 면적 50㎡ 이상	2,410,370원 이하 (4인이상 세대는 2,636,380원 이하)	우선공급	2007.11.8 (09:30 ~ 16:30)		
		1순위	2007.11.9 (09:30 ~ 16:30)		
		2, 3순위	2007.11.12 ~ 11.13 (09:30 ~ 16:30)		

※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공급 신청인원이 “일반공급호수+우선공급신청미달호수+예비자모집호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음.(후순위 접수여부는 선순위 접수마감일 19:00 참아름 홈페이지에 게시 공고)

■ 장소

▷ 신청접수 : 한국폴리텍여자대학 강당(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349-6)

▷ 당첨자발표 및 계약체결 : 안성공도 참아름 국민임대아파트 전시관(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95-1)

※ 한국폴리텍여자대학은 안성IC에서 안성방면으로 3km지점에 위치하며, 안성공도택지개발지구에 연접하여 있으며 전시관은 안성공도 참아름 국민임대아파트 2블럭 건설현장 좌측에 위치하고 있음
(각각 정확한 위치는 참아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람)

입주자 선정

■ 일반공급

공급형별	입주자 선정 방법
전용면적 50㎡미만	월평균소득이 1,721,700원(단, 4인이상 세대는 1,883,130원)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며,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에만 월평균소득이 1,721,700원을 초과하는 세대에게 공급함.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성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용인시, 이천시, 천안시, 음성군, 진천군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전용면적 50㎡이상	아래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순위내 경쟁시에는 안성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함. ①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주소지로 판단함.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후에도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우선공급

구 분	입주자선정 방법
①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제4항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사업지구 철거민 등에게 일정한호수를 우선공급함.(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②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제5항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의 대상자에게 일정한호수를 우선공급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단, 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자 - 북한이탈주민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청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 미성년(만20세 미만)인 자녀가 3명이상 있는 자 -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 우선공급 배정호수

블록	공급 형별	① 공급규칙 제32조 제4항	② 공급규칙 제32조제5항						
			계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 자 등	3자녀 이상 가구	중소 기업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정
2	39	47	94	14	14	14	14	14	24
	49A	36	71	10	10	10	10	10	21
	49B	3	6	1	1	1	1	1	1
	49C	6	7	1	1	1	1	1	2
	59A	6	14	2	2	2	2	2	4
	59B	6	14	2	2	2	2	2	4
5	39	24	47	7	7	7	7	7	12
	49A	17	35	5	5	5	5	5	10
	49B	1	7	1	1	1	1	1	2
	49C	4	8	1	1	1	1	1	3
	59A	5	8	1	1	1	1	1	3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4항에 의한 사업지구 철거민에 대한 우선공급 방법은 별도 안내문에 의함
- ※ 우선공급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의한 순위 및 배점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함.(단,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처에서 정하여 통보한 순위에 의함)
- ※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 동일 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8항에 의거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대로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구 분	3점	2점	1점
① 세대주 나이	50세 이상	40세 이상	30세 이상
② 부양가족의 수	3인 이상	2인	1인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④ 미성년(만20세미만) 자녀의 수	3자녀이상	2자녀이상	-
⑤ 만65세이상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이상 부양자 : 3점			
⑥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⑦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부터 1년이상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건설근로자 : 3점			
⑧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3점(전용 40㎡미만 신청자만 해당)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3점 (전용 40~50㎡미만 주택 신청자만 해당)			
⑩ 청약저축 추가납입회수 (전용면적 50㎡이상 주택 신청자만 해당) -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12회이상 추가납부자 : 2점 -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6회이상 추가납부자 : 1점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가입자 : 3점 (전용 50㎡이상 주택 신청자만 해당)			

- ※ ⑤, ⑥, ⑧, ⑨, ⑪의 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 제외
-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포함) 및 형제·자매(만20세이하 또는 만60세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을 포함함.

신 청 서 류

- ※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 타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해당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통서류

- ▷ 국민주택공급신청서 1통 : 전용면적50㎡ 이상의 주택을 신청하는 청약저축 1,2순위자에 한하여 제출(청약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
-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안성시 거주자의 경우 안성시 전입일자가 표시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 배우자가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 ▷ 주민등록표초본 1통 : 아래의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당해 시·군·자치구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과거 5년이상 주소가 표시되어야 함)
 - 만65세이상의 노부모 1년이상 부양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호적등본 1통 : 아래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미혼,이혼,사별 등)
- 만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직계존속의 장애인증명서 제출)
- 미성년(만20세 미만) 자녀의 수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 **소득입증서류 :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현직장, 최종년도분)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2006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2006년도 소득금액증명(재직증명서 첨부)	해당 직장 세무서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 입사일자 기재 또는 재직증명서 첨부	해당 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2006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법인사업자		2006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2006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세무서 해당 직장
신규사업자로서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등급표시) <또는> 국민연금보험료납부증명서(등급표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동사무소
무직자 등		비사업자 확인각서(공사 소정양식)	접수장소

- ※ 위 소득입증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의 소득입증서류로서 개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소득의 입증은 신청자께서 하셔야 하며, 소득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신분증,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음)**

▷ **국민임대주택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하는 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우선공급 대상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동사무소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동사무소
	국가유공자(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국가보훈처(지방보훈청)에 신청	국가보훈처 (지방보훈청)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통일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지방중소기업 청
	미성년(만20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호적등본	동사무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모.부자가정 증명서	동사무소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서	시.군.구청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의 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	(별도제출 없음)
	미성년(만20세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호적등본	동사무소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동사무소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상시근로자의 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의 중소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해당 직장
	1년이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자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	건설근로자 공제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전용면적 40㎡미만 신청자만 해당)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동사무소
	-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모.부자가정 증명서	동사무소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방보훈청 동사무소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통일부
	- 일군위안부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부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자체 (동사무소)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 증빙서류	관련기관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전용면적 40~50㎡미만 신청자만 해당)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지자체 (동사무소)
	청약저축 추가납입회수(전용 50㎡이상주택 신청자만 해당)	국민주택공급신청서	가입은행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전용면적 50㎡이상 신청자만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당첨자발표 및 계약체결

■ 동.호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층별,향별 구분없이 국민은행 전산 추첨에 의함.
- ▷ 당첨자 명단은 **경기지방공사 안성공도 참아름 국민임대주택 전시관(안성)**에 게시하며, 경기지방공사 **홈페이지 (www.gico.or.kr)** 및 경기지방공사 국민임대주택 **참아름(www.chamarum.net)**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개별통보 하지 않으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모집호수의 일정비율(30%)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함. (동.호는 계약체결시 추첨으로 결정)

■ 계약체결

- ▷ 당첨자는 ① **계약금**, ② **인감증명서 1통**(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 ③ **인감도장**, ④ **신분증**을 준비하여 지정된 계약체결기간(별도 계약안내를 하지 않음)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 허용. (단, 배우자 외의 자가 대리할 경우 상기 본인 구비서류외에 ①위임장 ②당첨자 인감증명서 ③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임대보증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 개설기관 : 국민은행, 계좌번호 : 965601-01-300904, 예금주 : 경기지방공사
- ▷ 납부방법 : 지정된 임대보증금은 납부약정일에 해당은행 본·지점 무통장 입금(타행입금 불가)하시기 바라며, 납부일정 및 금액등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 무통장 입금시 입금인란에 동·호수를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유 의 사 항

철 거 민 우선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4항에 의한 사업지구 철거민 등에 대한 우선공급은 별도의 안내문 에 의합니다.
신 청	○ 신청은 본인, 배우자 또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당첨/계약 및 위 약 금	○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공가 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실제 계약 및 입주시까지의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되는 경우에는 신청 및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여 당첨후 계약해지시에는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계약체결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월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변경	○ 당첨(예비당첨자 포함)후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입 주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입주시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되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비당첨자가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샷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께서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홍보.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 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참고사항	○ 안성공도 택지개발지구의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의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지자체,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입주시기에 맞추어 완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초등학생은 택지개발지구에 연접하여 있는 공도초등학교에 배정하게 됩니다. (단지 내 초등학교의 개교예정시기는 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에 의하여 수립될 예정이며, 정확한 사항은 안성시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경기지방공사가 직접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승인조건에 의거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의 시공업체는 코오롱건설(주)입니다.

참 고 사 항

노약자.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최초 계약자의 가족 중 “제3급 이상의 지체장애인 또는 만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있는 경우 계약체결시 신청한 세대에 한하여 아래의 노약자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지체장애인)
- 욕실 미끄럼방지타일(지체장애인, 만65세이상 고령자)
- 공용 점자스티커(시각장애인)

이 주택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을 받아 건설됩니다.

문의전화	안성공도 국민임대주택 전시관 (031)656-5800 경기지방공사 고객지원센터 1588-0466 경기지방공사 주택분양팀 (031)220-3282 ~ 3286	
전시관 위치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95-1	
인터넷	www.gico.or.kr 경기지방공사 홈페이지 www.chamarum.net 참아름 홈페이지	

경 기 지 방 공 사